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법령 변경 등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법령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하수도법」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나.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법령 변경

- 「구미시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단위사무명 수정
-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3. 조례개정안 : 불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하고 “폐함을”을 삭제한다.

제2조의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미시사무위임사항(권한위임)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내무행정	1.지방의회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임용(상당 계급 승진,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회사무장
		2.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3.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2.공무원 복무 복리에 관한 권한	1.청내 방호 및 제복무 관리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출장소장
		2.일일명령(당직, 비상근무, 출장 등)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구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3.문서의 접수 및 발송	사무관리규정 제22조제3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6조, 제31조	
재무행정	1.지방세법 관련 세무조사 등에 관한 업무	1.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	지방세법 제120조 제 항 지방세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31조	
		2.수입증지 수불 판매	수입증지조례 제8조 제4항	
	2.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1.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산림행정	1.산림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	1.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입산신고 해제권	산림법 제97조, 제98조, 제99조	
		2.산불예방 및 진화단속	산림법 제100조, 제100의2, 제102조	
		3.산림 기본 통계	통계법 제3조	
		4.입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업 행정	1.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업무중 다음 사항	1.농가 대여양곡 절량징수 등에 관한 업무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장소장
		2.원리곡 상환징수 유예 결손처분 등	"	
	2.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관한 다음 사항	1.농업사의 육성 및 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3	
		2.정주생활권 개발 업무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 36조	
		3.농업진흥 지역관리 업무	농업진흥특별조치법 제40조	
		4.위탁영농회사 지도관리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7조,	
		5.영농조합법인 관리육성 지도	동법시행령제15조의3 동법제6조 동법시행 규칙 제4조	
	3.농지법에 관한 다음 사항	1.농지이용계획 수립 시행	농지법 제13조	
		2.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제42조	
		3.농지관련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	농지법 제64조	
		4.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농지법 제65조	
	4.농업기계화촉진법 에 관한 다음사항	1.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지정 (읍면 단위 수리점에 한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구미시사무위임사항(권한위임)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내무 행정	1.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1.소속 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읍면동장
		2.소속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3.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4.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구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 근무규칙	
	2.사무인계, 문서관리 등에 관한 권한	1.소속 직원의 사무인계	사무관리규정 제6조	
		2.문서의 폐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3.적십자회비 부과 징수	행정지시	
	3.공무원 신규 임용등에 관한 권한	1.특별임용시험 제청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2.소속 공무원 전출입 제청	"	
		3.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동내 전보	"	
	4.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주민등록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20조	
		2.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민등록법 제21조	
	5.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권한	1.용자금 대부 신청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동조례 제8조	
		2.용자금의 상환	"	
	6.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영업의 신고	인장업법 제3조	
		2.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동법시행령 제3조	
		3.폐업 신고	동법시행령 제4조	
		4.인장업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	동법시행령 제2조	
재무 행정	1.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지방세법 제25조	
		2.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조정 징수	지방재정법 제62조	
		3.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사 사무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9조	
		4.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법 제196조, 234의 25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재무행정	2.재무회계규칙 중 다음의 권한	1.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구미시 재무회계규칙 제5조	읍면동장
		2.주민부담 1/2이상인 공사의 집행	"	
		3.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	
	3.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 관리(단 공유임야 대부 및 승낙 및 분수림설정과 사후관리는 제외)	지방재정법제73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물품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1.불용품 매각처리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제4조	
복지환경	1.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업무	1.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	
		2.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및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2.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1.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시행규칙 제9조	
	3.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지정폐기물 제외)	1.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 2조	
		2.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구미시환경미화원복무규칙 제4조	
		3.대형폐기물 수집 및 수수료 부과 징수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4.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복무규칙 제17조	
		5.관할 청소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폐기물관리법 제4조	
		6.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7.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신청 전달 및 업소 관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8.시민의 청소 계몽 지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9.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10.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	"	
		11.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유지 관리	"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복지 환경	4.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사항	1.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설치신고및변경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35조	읍면장
		2.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설치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3.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5조,제41조	읍면동장
		4.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	
	5.매장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공동묘지 사용 허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 통상	1.액화석유 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1.지도 감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및사업법 제27조	
		2.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금지 하거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임시영치	"	
		3.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수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및사업법 제16조	
	2.농지취득자격증 명의발급에 관한 사항	1.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농지법 제8조	
		2. 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2조 제2항	
	3.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사용료의 부과, 징수	구미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2.사용료의 감면	동조례 제5조	
		3.사용보조금 징수, 반환	동조례 제6조	
		4.사용 허가	동조례 제7조	
		5.시장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동조례 제8조	
		6.사용자의 권리의무 위반조치	동조례 제9조	
		7.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 신고 수리	동조례 제10조	
		8.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11조	
		9.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제한	동조례 제12조	
		10.설비의 변경에 대한 명령 및 원상회복	동조례 제15조	
		11.설비소멸에 대한 배상 조치	동조례 제16조	
		12.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동조례 제17조	
		13.사용료의 환급성	동조례 제18조	
		14.관리 운영	동조례 제20조	
		15.상인 단체의 구성	동조례 제22조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 도시	1.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 (굴착제외) 및 일시사용 허가	도로법 제40조	읍면장
		2.점용료 조정 징수	"	
		3.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	
	2.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한 권한	1.가로수 유지 관리	산림청 예규 제499호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3.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권한	1.간이상수도 관리	수도법 제32조 제2항	
		2.급수 공사의 승인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3.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7조	
		4.급수공사 시행 및 감독	조례 제8조	
		5.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	조례 제15조	
		6.흡수정 등의 설치 허가	조례 제16조	
		7.수도사용 신고 처리	조례 제20조	
		8.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	조례 제25조	읍면동장
		9.급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	읍면장
		10.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조례 제32조	
		11.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조례 제41조	
		12.정수 처분	조례 제43조	
		13.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례 제45조	
		14.급수장치 철거 및 부정수도 단속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46조	
		15.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	읍면동장
	4.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부동산 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조사질문 및 지도감독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제1항	
산업 행정	1.농지법에 관한 다음 사항	1.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정 제3조 제1항)	읍면장
		2.대리 경작자의 지정 등	농지법 제19조	
		3.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	농지법 제7조 1항	
	2.부정양곡 단속에 관한 사항	1.불법 양곡 매매업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읍면동장
		2.양곡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양곡관리법 제20조 제1항, 동법제36조 제1항 제3호	
	3.농업, 농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가축자가 사육시설 확인원	내무부 예규제544호	
		2.대마재배 취급 허가	대마관리법 제5조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